

의안번호	2211040
의 퇴 인	윤준병의원
회 답 일	2025.7.15.
추 계 번호	25B3373

교통기본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최저교통서비스 지표 및 최저교통서비스 기준을 설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7,400만원(연평균 1,48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최저교통서비스의 지표 및 기준 (안 제15조)	74	-	-	-	-	74	14.8

- 주 1.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2.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추산한 사항으로, 향후 실제 사업계획이 확정될 경우 소요비용은 달라질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2조 (국가교통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교통이념을 달성하고 교통정책 기본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교통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5년 단위의 국가교통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제4항) 1. 교통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 2. 교통의 수요와 공급 전망 3. 교통과 관련된 에너지소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현황 및 전망 4. 국가교통망 구축의 목표와 단계별 추진전략 5. 국가교통시설의 신설·확장 또는 정비사업 6. 교통물류거점 및 연계수송체계 7. 광역 교통정책 방향 8. 도시 및 지역 내 교통정책방향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9. 국가물류정책의 기본방향 및 단계별 추진전략 10. 교통기술의 개발 및 활용 1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 교통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 국가교통망과 다른 나라 교통망 간의 연계운영·개발 및 협력 13. 국가교통사업의 재원조달방안과 투자우선순위	
2	안 제14조 (교통권 보장 및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의 안전보장·질서유지와 복리증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쾌적하며 안전하게 교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교통권을 보장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통서비스 수준의 양적·질적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3항)	의무규정 재량규정
3	안 제15조 (최저교통서비스의 지표 및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최저교통서비스를 측정·평가·관리하기 위한 지표(이하 “최저교통서비스 지표”라 한다) 및 기준(이하 “최저교통서비스 기준”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고시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최저교통서비스 기준을 강화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이 경우 미리 제37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제4항)	재량규정 의무규정
4	안 제16조 (국가교통서비스 조사·평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최저교통서비스 정책을 합리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통서비스의 제공 실태에 관한 조사·평가를 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를 위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고 제공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5	안 제18조 (교통서비스 취약지역의 지원강화)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서비스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교통서비스 취약지역 지원을 위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제2항)	재량규정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6	안 제19조 (교통서비스개선대책의 수립·시행)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서비스 취약지역의 최저교통서비스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교통서비스개선대책(이하 “교통서비스개선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전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통서비스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교통서비스개선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제2항) 1. 교통서비스개선대책 대상지역의 위치 및 범위 2. 교통서비스개선대책의 기본방향 3. 최저교통서비스 기준 대비 달성 목표 4. 교통체계의 접근성 및 이동성 향상 방안 5.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확충 및 서비스 향상 방안 6. 보행 및 도로환경 개선 방안 7. 교통서비스개선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財源) 확보 방안 8. 그 밖에 교통서비스개선대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의무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서비스개선대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7	안 제20조 (교통서비스개선대책 시행 결과 제출 및 평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교통서비스개선대책의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30조에 따른 교통복지기금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차등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8	안 제23조 (교통기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을 제공하고, 미래 첨단 교통기술을 선도하기 위하여 교통기술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개발·보급·관리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기술을 개발할 때에는 산업계·학계·연구계 간 협동연구를 촉진하고 신기술 보호 등 유인책을 마련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9	안 제24조 (교통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촉진)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10	안 제25조 (민간참여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참여와 경쟁을 유도하여 교통서비스의 양적·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교통시설 등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개발·운영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의 참여촉진 및 투자확대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통시설 등 교통체계를 개발·운영할 때에는 사전에 민간부문의 수행 가능성, 효율성 및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11	안 제27조 (이용자의 권익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체계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권익 침해, 불만 및 피해발생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용자 권익보호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권익보호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제2항) 1.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교육 및 연구 2.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직 활동의 지원 및 육성 3. 이용자의 명예·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 4.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 조치 5. 그 밖에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의무규정
12	안 제28조 (이용료 감면액의 보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따라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 이용자의 이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해당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감면액을 보전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제1항에 따른 보전의 절차 및 방법, 보전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13	안 제29조 (국제교통협력 증진)	국토교통부장관은 남북 교통망 및 국제 교통망 확충 등 교통부문의 국제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제1항) 1. 국제 교통망 연결 및 운영 지원 2. 교통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3. 교통 분야 국제 표준화와 국제 공동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 4. 교통 분야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5. 교통 분야 민간부문의 국제협력 지원 6. 그 밖에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의무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의 국제협력 및 국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한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 표준화 및 국제 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14	안 제30조 (기금의 설치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체계 구축, 보행권 보장, 교통서비스 취약지역의 지원 등 국민의 교통권을 보장하고 교통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그 밖의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통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함(제1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함(제2항) 1. 정부의 출연금(出捐金)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세입결산분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 부담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6.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의무규정
15	안 제31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함(제1항) 1.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의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 2. 교통기술의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보급 및 그 관련사업 3. 보행권 보장을 위한 지원 사업 4. 교통서비스 취약지역의 지원을 위한 사업 5. 교통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촉진을 위한 사업 6.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3조에 따른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개발사업 7.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8. 그 밖에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의무규정
16	안 제33조 (국가교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국가교통체계에 관한 중요 정책 등과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교통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국가교통위원회를 둠(제1항) 국가교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제2항) 1.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중기투자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집행 실적 평가 3. 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투자재원 확보 4. 제16조에 따른 국가교통서비스 조사 계획의 수립 및 변경 5. 다른 법령에 따른 교통조사에 관한 자료의 조정 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조에 따른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 설정 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6조에 따른 중기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 및 제38조에 따른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 및 변경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8.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7조에 따른 제1종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및 변경 9.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0.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광역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정내용 중 중요 사항의 변경 1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수립 및 변경 1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3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3. 교통체계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1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교통체계지능화사업 또는 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시범사업을 포함한다) 등 국가교통정책의 종합조정 15.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16. 그 밖에 교통체계에 관한 국가의 중요 정책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17	안 제34조 (국가교통위원회의 구성 등)	국가교통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함(제1항)	의무규정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됨(제2항)	의무규정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제3항) 1. 당연직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차관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2. 위촉위원: 교통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위촉위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 관련 시민단체 및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함	의무규정
18	안 제35조 (국가교통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국가교통위원회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교통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분야별 국가교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둬(제1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제2항) 1. 국가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할 안전에 대한 검토·조정 2. 국가교통위원회가 그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의무규정
19	안 제36조 (국가교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교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의무규정
20	안 제37조 (지방교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소관 주요 교통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교통위원회를 둠(제1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표 1] 제정안과 현행법 비교 및 추계현황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12조 (국가교통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	• (미대상): 현행법(「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등)·제6조(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수립),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7조(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이미 규정된 사항으로 새로운 재정수반요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2	안 제14조 (교통권 보장 및 시책)	—	• (미대상) 현행법(「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보행권의 보장),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6조(보행교통 시책의 기본방향)·제37조(보행교통 실태조사 등)·제38조(보행교통 개선계획의 수립)) 등에 이미 규정된 사항으로 새로운 재정수반요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3	안 제15조 (최저교통서비스의 지표 및 기준)	○	• (추계)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4	안 제16조 (국가교통서비스 조사·평가)	—	• (미대상): 현행법(「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2조(국가교통조사)·제17조(교통조사자료의 종합관리))에 이미 규정된 사항으로 새로운 재정수반요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5	안 제18조 (교통서비스 취약지역의 지원강화)	×	• (제3호)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서비스 취약지역에 대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교통서비스 취약지역이 최저교통서비스 기준을 달성하도록 교통서비스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되나, 이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우선 최저교통서비스 기준 및 이 기준에 따른 교통서비스 취약지역이 확정되어야 하며, 해당 지역에 대한 교통서비스개선을 위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내용, 교통서비스개선대책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부담비율 등이 결정되어야 하나, 현재 이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므로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 — 다만, 정부에서 도로 및 철도 벽지노선 운행손실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으므로 참고할 수 있음
6	안 제19조 (교통서비스개선대책의 수립·시행)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7	안 제20조 (교통서비스개선대책 시행 결과 제출 및 평가)	×	[취약지역 교통서비스 주요 지원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벽지노선 지원사업	2024	2025
			버스 벽지노선 지원사업	37,537	39,423
			철도 공익서비스 비용 지원사업(벽지노선 경영손실 지원)	123,812	114,121
			도시형교통모델(지역자율)	32,799	33,881
			농촌형교통모델(자율)	24,924	26,596
			자료: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8	안 제23조 (교통기술)	—	•(미대상) 현행법(「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3조(교통기술정보의 관리))에 이미 규정된 사항으로 새로운 재정수반요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9	안 제24조 (교통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촉진)	—	•(미대상): 현행법(「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0조(교통기술인력의 관리 등))에 이미 규정된 사항으로 새로운 재정수반요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10	안 제25조 (민간참여 촉진)	—	•(미대상): 현행법(「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9조(민간 참여 및 해외 진출의 활성화))에 이미 규정된 사항으로 새로운 재정수반요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11	안 제27조 (이용자의 권익보호)	×	•(제3호)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체계 이용자의 권익 침해, 불만 및 피해 등에 대응하기 위한 권익보호 시책을 마련하고, 교통사업자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되나, 이에 대한 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권익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시책의 내용, 추진 방식, 대상 범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담 구조 등이 설정되어야 하나, 현재 이와 관련한 세부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합리적으로 비용을 추산하기 곤란한 사유에 해당		
12	안 제28조 (이용료 감면액의 보전)	×	•(제3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라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 이용자의 이용료를 감면하고, 그 감면액을 보전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되나, 이에 대한 재정소요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감면 적용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의 종류, 감면 대상자의 범위, 이용료 및 감면수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전 방법과 재정분담 비율이 확정되어야 하나, 이러한 세부사항이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어 현시점에 합리적으로 재정소요를 추정하기 곤란함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3	안 제29조 (국제교통협력 증진)	×	●(제3호) 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남북 교통망 및 국제 교통망 확충 등 교통부문의 국제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력을 증진하기 위한 시책마련과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 표준화 및 국제 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되나,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국제교통협력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지원대상 및 범위, 재정분담 구조 등이 명확히 설정되어야 하나, 현재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타나지 않아 합리적으로 비용을 추산하기 곤란함 － 다만, 국토교통부가 교통관련 주요 국제협력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으므로 참고할 수 있음 [교통관련 주요 국제협력 사업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table><tr><td>교통관련 주요 국제협력 사업</td><td>2024</td><td>2025</td></tr><tr><td>드론해외진출지원</td><td>50</td><td>50</td></tr><tr><td>지능형교통체계(ITS) 국제협력</td><td>950</td><td>950</td></tr><tr><td>자동차안전기준 국제화</td><td>690</td><td>690</td></tr></table> 자료: 국토교통부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교통관련 주요 국제협력 사업	2024	2025	드론해외진출지원	50	50	지능형교통체계(ITS) 국제협력	950	950	자동차안전기준 국제화	690	690
교통관련 주요 국제협력 사업	2024	2025													
드론해외진출지원	50	50													
지능형교통체계(ITS) 국제협력	950	950													
자동차안전기준 국제화	690	690													
14	안 제30조 (기금의 설치 등) <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5	안 제33조 (국가교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	•(미대상): 현행법(「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국가교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제107조(국가교통위원회의 구성 등)·제108조(국가교통실무위원회의 설치 등)·제109조(국가교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이미 규정된 사항으로 새로운 재정수반요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안 제34조 (국가교통위원회의 구성 등)		
	안 제35조 (국가교통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안 제36조 (국가교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16	안 제37조 (지방교통위원회)	—	•(미대상): 현행법(「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지방교통위원회))에 이미 규정된 사항으로 새로운 재정수반요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부칙과 국회 심의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제정안은 육상·해상·항공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교통정책의 방향 및 교통권 진흥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교통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국민경제 발전, 국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일부 조문은 현행법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 현시점에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사업비 추산이 가능한 안 제15조(최저교통

서비스의 지표 및 기준)와 관련한 소요비용을 추산함

□ (안 제15조) 최저교통서비스의 지표 및 기준

-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저교통서비스를 측정·평가·관리하기 위한 최저교통서비스 지표 및 최저교통서비스 기준을 설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제정안은 최저교통서비스 지표 및 기준 고시의 주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현시점에 이를 추정하기 곤란하나,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유사사례 및 의견을 참고하여 5년 주기로 지표 및 기준을 고시하는 것으로 가정함
- 유사사례를 참고할 경우 2027년 7,4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유사사례: 국토교통부의 “광역교통 지표개발 및 최저서비스 기준 마련연구 (2020~2021)” 연구용역 사업비는 7,370만원으로 나타남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최저교통서비스 지표 및 최저교통서비스 기준을 설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7,4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2] 최저교통서비스 지표 및 기준설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최저교통서비스 지표 및 기준설정	74	-	-	-	-	74

주 1.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2.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추산한 사항으로, 향후 실제 사업계획이 확정될 경우 소요비용은 달라질 수 있음

IV. 부대의견

-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추산한 사항으로, 향후 실제 사업계획이 확정될 경우 소요비용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문지은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assembly.go.kr